

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(영구시설물 축조) 동의안

(의안번호 제275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03. 07. 고성군수
나. 회부일자 : 2024. 03. 08.
다. 상정·의결일자 : 2024. 03. 21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경제기업과장 직무대리 강승완)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중앙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따라,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빠르게 확산하므로 이에 대응한 충전시설 확충 필요
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친환경 자동차법’) 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5(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)에 따라 지자체에서 설치한 주차장(주차면 50면 이상)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
-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3제2항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에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군의회에 동의가 필요함

나. 주요내용

○ 기본현황

- 1) 주차장명: 고성공룡시장 공영주차장(63면)
- 2) 위치: 고성읍 성내리 239 외(2,282㎡)
- 3) 준공일: 2021. 5. 11.
- 4) 관리형태: 고성공룡시장상인회 관리위탁
- 1년 단위 위탁계약(2024. 1. 1. ~ 2024. 12. 31.)

다. 사업개요

- 1) 사업명: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
- 2) 설치장소: 고성공룡시장 공영주차장
- 3) 추진방식: 공유재산 사용허가 후 민간사업자 시설물 설치
- 4) 사업자: 친환경 충전시설을 보급하려는 민간사업자
- 5) 주요시설: 급속충전기(50Kw) 1대, 완속충전기(7Kw) 1대,
부속시설(캐노피, 분전반, 계량기) 설치
- 6) 현 황 도



라. 운영방법

- 1) 운영주체: 민간사업자
- 2) 운영기간: 공유재산 사용허가 후 10년(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)
- 3) 허가조건: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사업자 원상복구
- 4) 운영범위: 전기차 충전서비스(설치 포함) 제공,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

마. 향후계획

- 2024. 3. :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(영구시설물) 설치 공의
- 2024. 4. :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계약
- 2024. 4. ~ :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

바. 참고사항

- 예산조치: 해당 없음
 - 비용추계서: 미첨부사유서 붙임
- 관계법령: 붙임 참조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제출 사유

- 본 동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, 고성공룡시장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되었음.

○ 주요 내용

- 고성공룡시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 및 운영방식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.

[참고 1] 사업개요

- 설치장소: 고성공룡시장 공영주차장(63면)
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5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50면 이상 주차장은 환경친화적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임.
- 사업자: 친환경 충전시설을 보급하려는 민간사업자
- 추진방식: 공유재산 사용허가 후 민간사업자 시설물 설치
- 주요시설: 급속충전기(50Kw) 1대, 완속충전기(7Kw) 1대, 부속시설 등

[참고 2] 운영방식

- 운영주체: 민간사업자 직접 운영
- 운영기간: 공유재산 사용허가 후 10년(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)
- 허가조건: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사업자 원상복구
- 운영범위: 전기차 충전서비스(설치 포함) 제공,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 등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, 동의 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, 친환경 자동차 정책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전기차 운행자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의 측면에서 계획된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시설 설치 및 향후 정기적 점검방안 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3. 21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